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앙성평등센터 및 지역성평등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48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앙성평등센터 및 지역성평등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	2
[참고자료 1] 지역 양성평등 센터 개요(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11
[참고자료 2] 지역 양성평등센터 주요 사업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앙성평등센터 및 지역성평등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성평등센터와 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제46조의4, 제46조의5 및 제49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현행	개정안
	<u>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중앙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46조의4(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u>1. 성평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u> <u>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운영 지원</u> <u>3.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운영</u> <u>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46조의5(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현행	개정안
	(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 신설 >	제49조(청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6조의5에 따라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생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2026년 1월 현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1)에 따라 지정받은 지

1)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역 성별영향평가센터²⁾는 16개소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상담·자문 기능 외에도 성별 통계 관리, 여성친화도시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기존의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양성평등 환경조성 사업³⁾을 추가하여 ‘지역양성평등센터’로 기능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로 2026년 1월 현재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중 6개소만 지역양성평등센터가 설치되었고, 이중 광역 및 기초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⁴⁾는 2개소(부산, 전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2) 성별영향평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로 구분됨.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는 1개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가, 지역 평가센터는 2026년 1월 현재 16개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운영중에 있음.
- 3)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주민 참여 지역 정책 모니터링 추진
 - 지역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 4)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운영, 광역-기초 간 상호협력, 기초단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거점 역할 수행

< 지역양성평등센터 사업 개요 >

- (현황) 6개소 운영 중
 - 인천, 대전·세종*, 전남, 경북(2019년), 부산(2021년), 전북(2022년)
 - *경기('19년~'23년) → 대전·세종('24년~)
- (방식) 유사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양성평등센터' 기능 확대
- (기능)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평등 의식·문화확산사업 운영
 - 일반형(인천, 대전·세종, 전남, 경북): 광역 단위 운영
 -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정책 모니터링, 지역 청년 공감·소통 등
 - 거점형(부산, 전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포괄 거점 운영
 - 일반형 기능 + 거점 기능(지역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일반형 양성평등센터를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로 전환하고,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지역양성평등센터 관련 계획>

구분	일반형 양성평등센터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주요 기능	[광역 단위 운영] ·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 지역 청년 공감·소통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확산] ·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 지역 청년 공감·소통 + · (거점기능) 지역 성평등 문화 공동 포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다양화)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사업 추진
	→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정안은 중앙성평등센터 및 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성평등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중앙성평등센터의 사업으로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6조제5항⁵⁾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업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음.

-
- 5)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중앙성평등센터(개정안) 사업 비교 >

구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현행법 제46조제5항)	중앙성평등센터 (개정안 제46조의3제1항)
주요 기능 (사업)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6.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연구 사업	1.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4. 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따라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중앙성평등센터의 고유한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조사·연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역 센터에 대한 평가·조정 등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성평등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에 지역성평등센터⁶⁾ 운영에 소요

되는 예산은 30억 6,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다음,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성평등센터 및 지역성평등센터 지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개정안 제46조의5제2항의 “업무정지”를 “시정명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⁷⁾.

- 개정안 제46조의5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안 제46조의5제1항은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는 “시정명령”의 오기(誤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다만 중앙정부 중심으로 성평등정책이 추

6) 현재 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 5개소의 2026년 예산은 9억 5,400만원임.

7) 「양성평등기본법」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될 경우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성평등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성평등센터의 운영 주체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성평등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인 중앙 및 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에 성평등 교육, 전문인력양성, 문화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단체·기관이 이미 있으므로, ‘중앙·지역성평등센터’로서 고유한 역할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1】 지역 양성평등 센터 개요(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 개 요

- 지역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일반형, 민간위탁) 2019년~, (거점형, 지자체보조) 2021년~

□ 수행기관 : 6개소(일반형(인천, 대전·세종*, 전남, 경북), 거점형(부산,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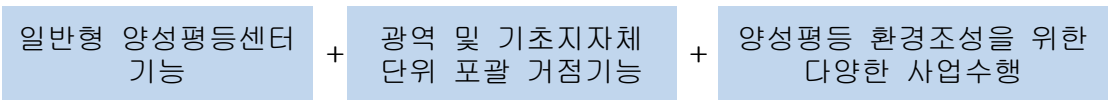
구분	일반형	거점형
지원예산('25년)	145.5백만원	352백만원
지원인력	전담인력 2명	센터장 1명, 전담인력 4명

* 경기('19년~'23년) → 대전·세종('24년~현재)

□ 일반형 양성평등센터 <광역단위 운영>

-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 추진으로 성평등 문화·의식 형성
 - * 도서지역 및 특수학교 청소년·교사, 공공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 등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지역 주민이 직접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평가·모니터링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후 개선사항 발굴·제안
 - * 주부, 지역 시민 활동가 등 다양한 참여자 대상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지역 청년 공감·소통) 지역 정주환경, 일·생활 균형, 성평등 조직문화 등에 대한 청년 간 소통 기회 마련

□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확산>



- (거점기능)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공동포럼 등 구성·운영, 기초 단위까지 확산된 다양한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다양화)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개선 및 이행 등 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성평등 지역 특화 사업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2026)

【참고자료 2】 지역 양성평등센터 주요 사업

○ 지역 양성평등센터(6개소)를 통해 ①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②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③청년 공감·소통, ④지역 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지역명	2025년 주요 성과
인천	① (성평등 교육·문화) 도서·벽지 중학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지원(교육청 연계) ② (정책 모니터링) 인천둘레길 16코스 관광콘텐츠 모니터링·의제 발굴 및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인천 청년 1인 주거·안전 관련 정책 제안 및 논의
대전·세종	① (성평등 교육·문화) 마을공동체, 지역리더, 공공기관 등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② (정책 모니터링) 대전·세종 청년조례·생활체육시설 모니터링·의제 발굴 및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성별고정관념 등 간호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평등한 일터를 위한 제안
전남	① (성평등 교육·문화) 청년, 대학생, 농·어업인 등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강사양성 등 ② (정책 모니터링) 전남 가족정책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워라벨을 키워드로 대학 선·후배 대화의 장 마련
경북	① (성평등 교육·문화) 교육청·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양성평등교육 역량강화 교육 ② (정책 모니터링) 도내 중소기업 대상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경북 남성 청년 대상 육아휴직 및 돌봄 등 애로사항, 인식차이 등 논의
부산	① (성평등 교육·문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맞춤형 교육 및 공공기관 찾아가는 교육 ② (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청년 공간 등 지역 정책 및 공간 모니터링 ③ (청년 공감·소통) 양성평등 정주환경 및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청년 토크콘서트 추진 ④ (지역특화사업) 지역정책모니터링 연계 우수공간(7곳) 선정 “양성평등도시, 부산” 홍보
전북	① (성평등 교육·문화) 초·중학교 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② (정책 모니터링) 골목길 보행자 안전 모니터링 및 성평등한 지역 환경 개선안 도출 ③ (청년 공감·소통) 결혼이주배경, 귀농귀촌청년 등 성평등한 일터와 지역공동체 간담회 ④ (지역특화사업) 근현대사 전북 여성 생애구술사,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2026)